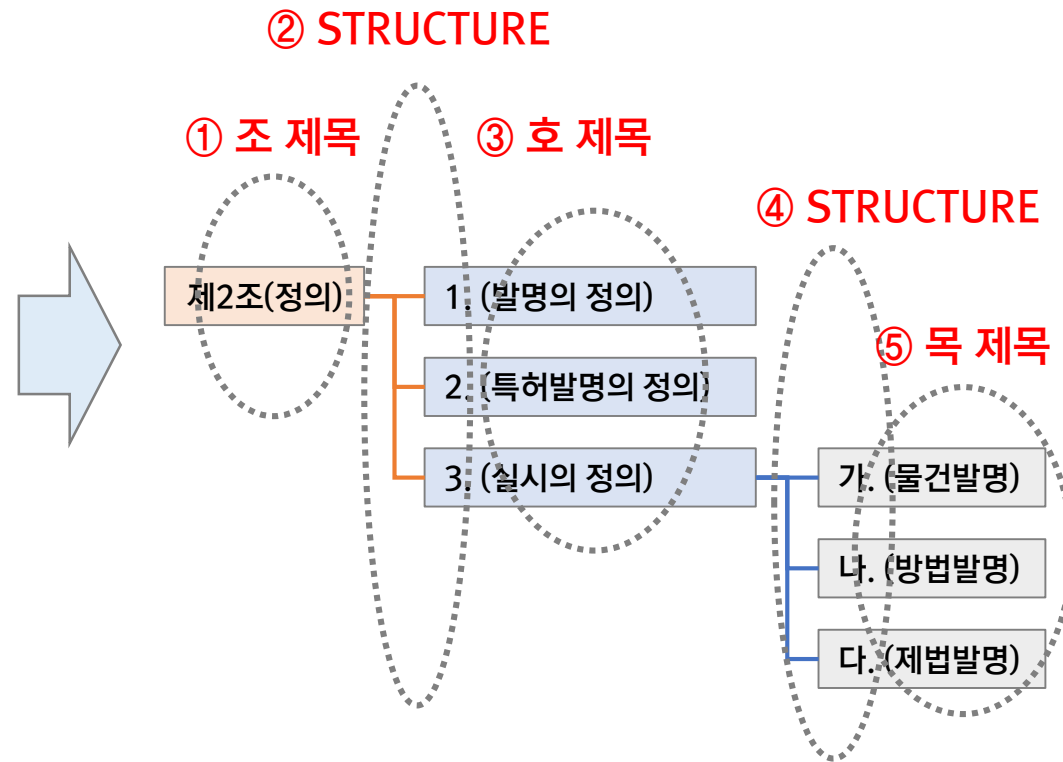


제목 암기 역시 장 > 절 > 조 > 항 > 호 > 목 순서대로 암기해야 한다. 다만, 항, 호, 목은 제목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임의로 제목을 만들어 암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명의 정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의 정의)**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의 정의)** “실시”란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가. **(물건발명)**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 나. **(방법발명)**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다. **(제법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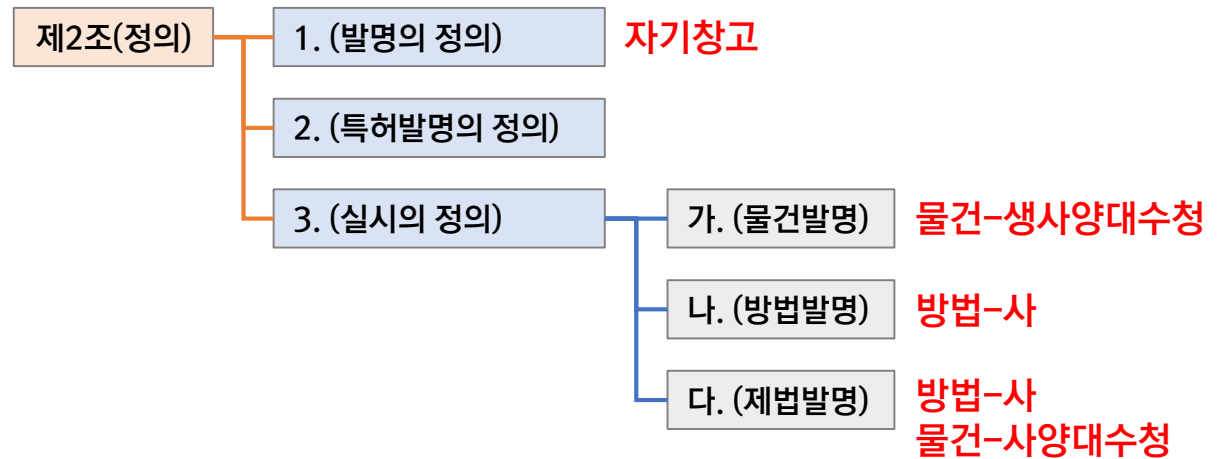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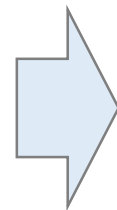


제목을 암기한 후에는 항, 호, 목의 **핵심 키워드를 암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두문자를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발명의 정의)에서 키워드는 “자연법칙의 이용, 기술적 사상, 창작, 고도”와 같이 4가지 단어로 되어 있으며 이 경우 두문자를 붙여 「자기참고」란 단어를 만들 수 있다.

##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명의 정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의 정의)**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의 정의)** “실시”란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가. **(물건발명)**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 나. **(방법발명)**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다. **(제법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키워드 자체만으로는 그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였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키워드에 살을 붙여 완결된 문장 형태로 암기해야 한다. 완결된 형태로 암기했다는 것은, 암기한 내용을 지금 말로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일주일 후 그리고 한달 후에도 말로 할 수 있어야 한다.** 비휘발성이 되기 위해서는 **조문이 가지는 의미를 100%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암기해야 한다.**

##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명의 정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의 정의)**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의 정의)** “실시”란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가. **(물건발명)**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 나. **(방법발명)**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다. **(제법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명의 정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의 정의)**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의 정의)** “실시”란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가. **(물건발명)**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 나. **(방법발명)**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다. **(제법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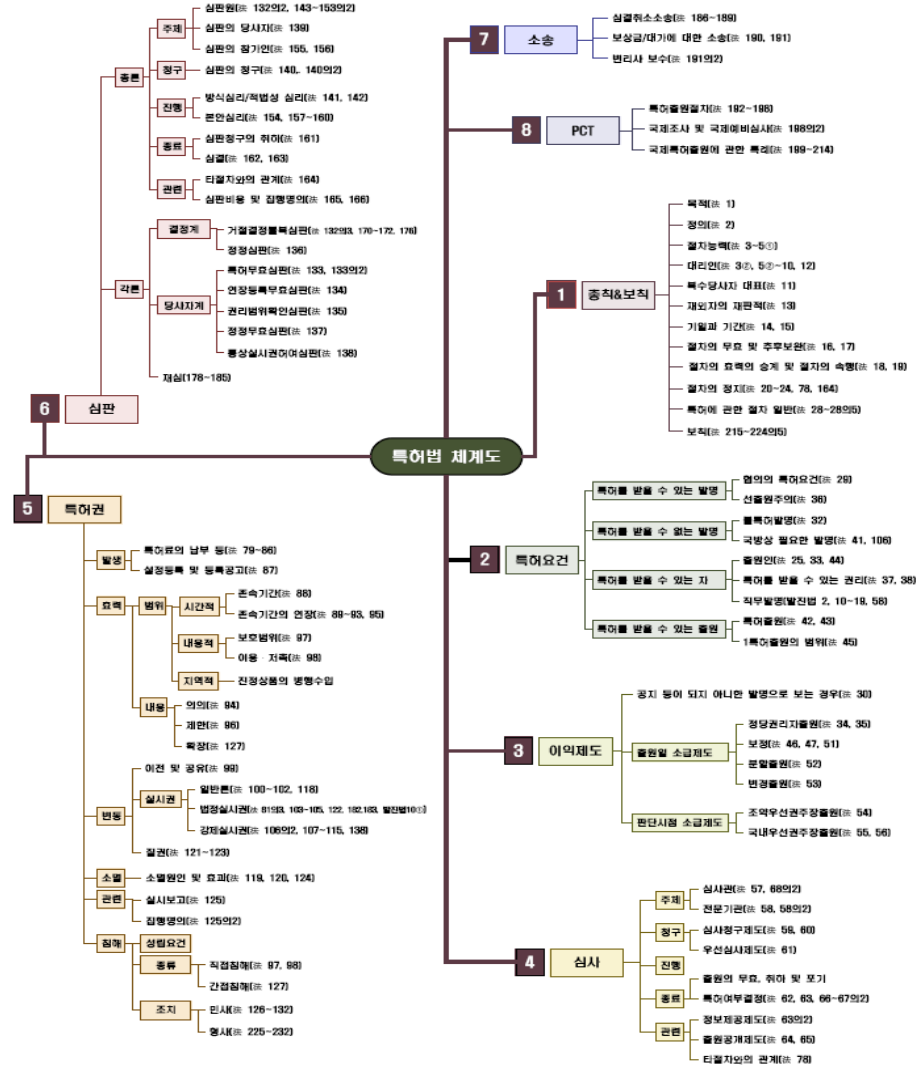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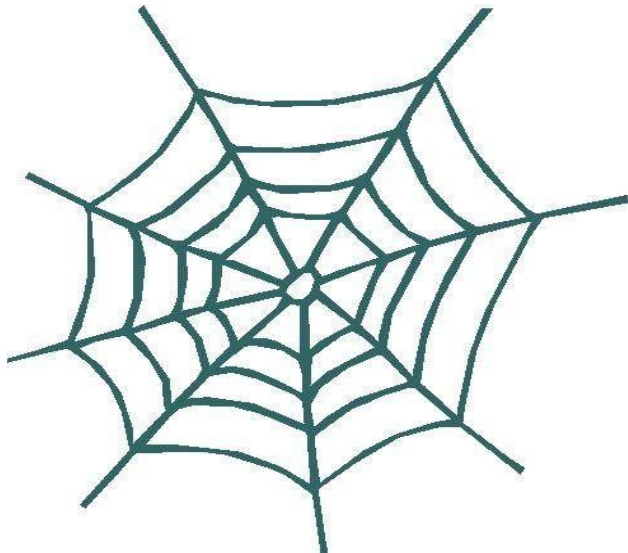
관련조문을 연결하면, 법전을 한 번 보고도 다른 사람들이 법전을 본 것의 2배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수험생들이 공부할 때 인용하고 있는 조문에 인용된 조문의 내용을 표시(Forward Citation)하지만 인용된 조문에는 인용하는 조문을 표시하지 않고(Backward Citation) 있습니다.

참 조	조 문	인용하고 있는 조문에 인용된 조문 내용 표시
	<p>제68조 【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14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심판관의 제척, 단 전심관여는 제외)를 준용한다.</p> <p>제93조 【준용규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심사관에 의한 심사), 제63조(거절이유통지), 제67조(특허여부결정의 방식), 제14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심판관의 제척, 단 전심관여는 제외)를 준용한다.</p>	
法 68	제148조 【심판관의 제척】	
法 93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2.29.>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심판관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취소신청인인 경우</li> <li>2.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취소신청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li> <li>3.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취소신청인의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경우</li> <li>4.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 감정인이거나 감정인이었던 경우</li> <li>5.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취소신청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li> <li>6.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특허여부결정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li> <li>7.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li> </ol>	

인용된 조문 인용하는  
조문 표시

법과목 공부는 거미줄 치듯이 하여야 한다. 먼저, 뼈대가 되는 줄을 치고, 점차적으로 촘촘하게 줄을 쳐서 먹이감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즉, 기본서의 목차를 통해 특허법의 체계를 익히고, 그 체계 속에서 법조문을 암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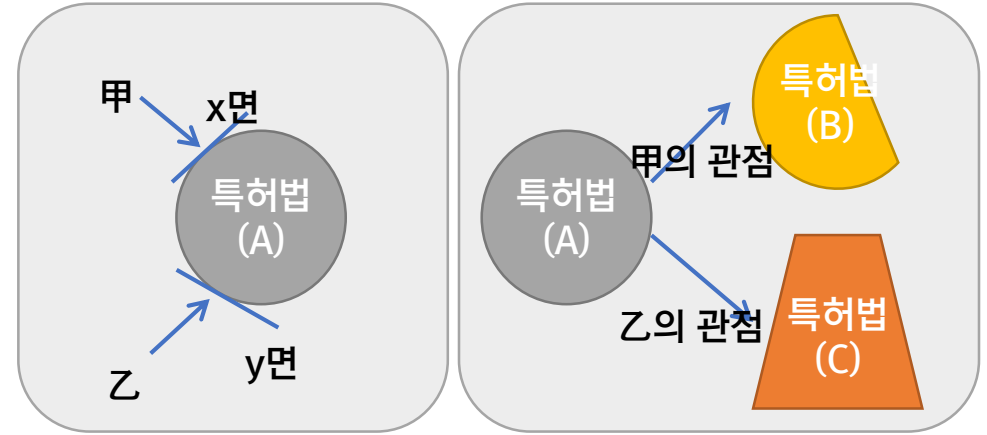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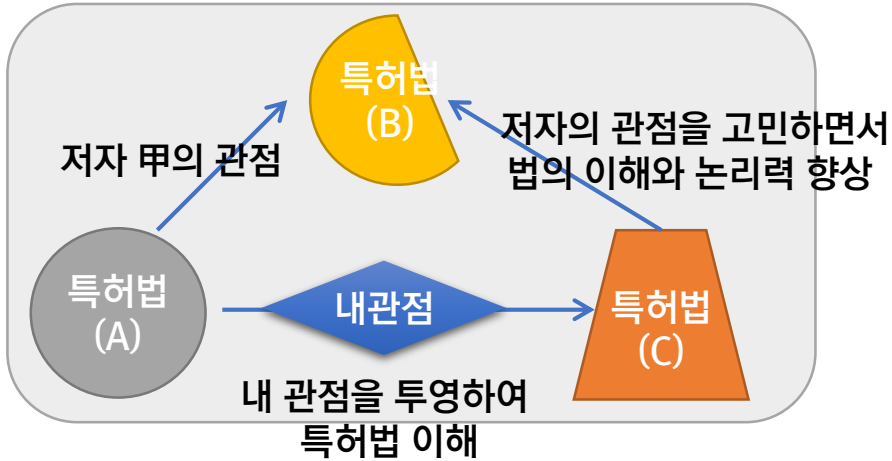


1차 공부를 하면서, 2차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1차와 2차의 공통 과목인 **특허법과 상표법**을 2차 수준에 맞춰서 공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목차를 도구화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잡아준 물고기를 먹는 것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아는 것의 차이하고 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잡아준 물고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생존할 수 있지만, 잡아준 물고기를 단순히 먹는 사람은 물고기가 없다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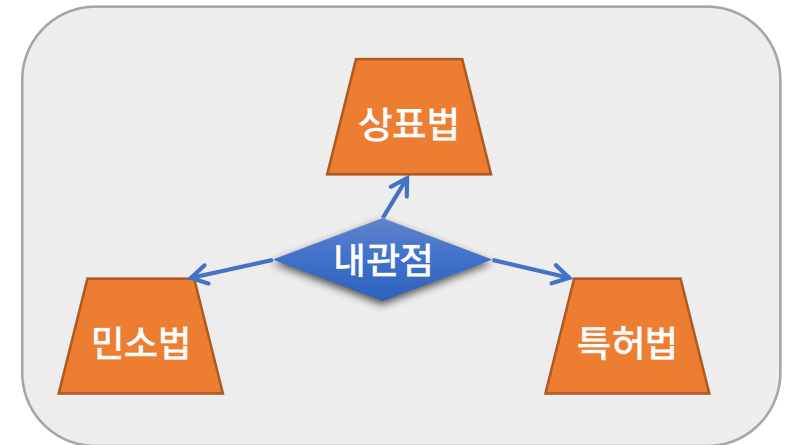
구분	1차 공부	2차 공부
정의	눈으로 보는 공부	손으로 쓰는 공부
능력	내용을 읽고 옳고 그름에 대한 지적할 수 있는 능력	특정 주제에 대해 자신의 논리에 의해 출제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개할 수 있는 능력
배양	이해의 폭을 넓히고 많은 문제를 풀어서 틀린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능력 배양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고 정리한 내용을 추출하여 내용을 쓸 수 있는 논리력 배양
방법	객관식 문제풀기 by 법조문 암기 + 문제풀이 스킬 익히기	사례 문제 풀기 by 법조문 암기 + 문제풀이 스킬 익히기 + 답안지 쓰기 능력 배양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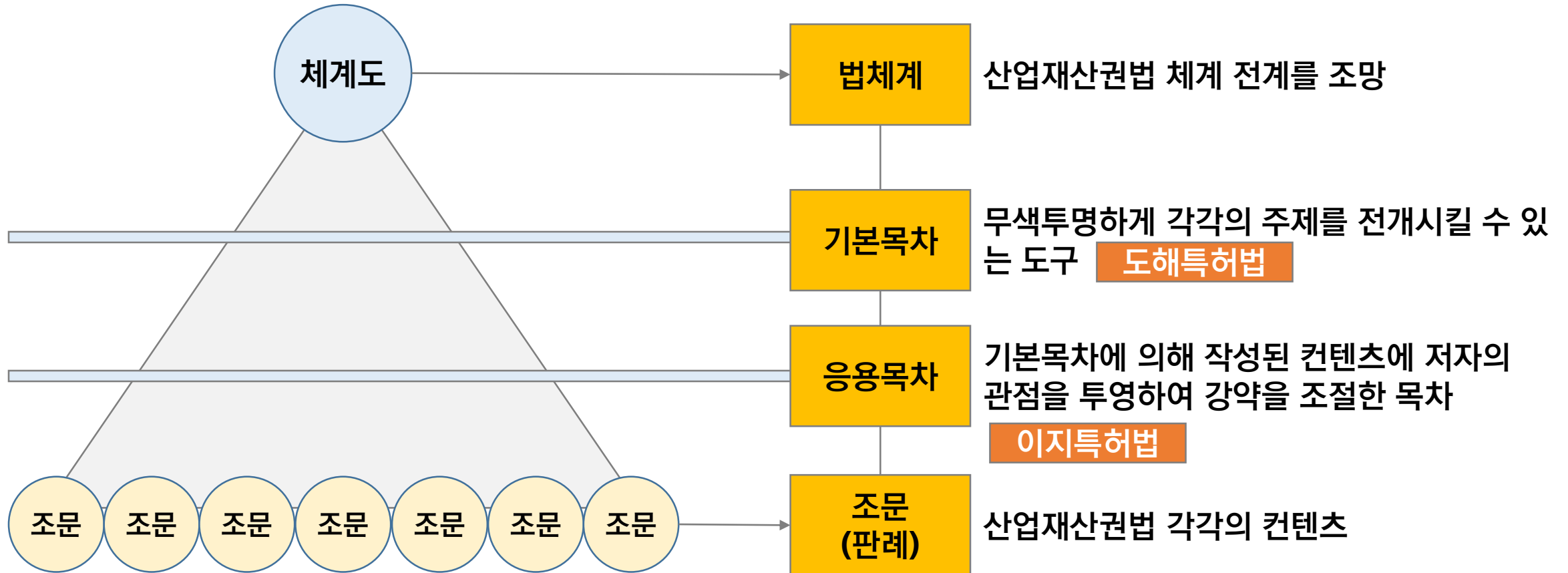
목차는 알고 있는 내용을 풀어쓰기 위한 도구이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저자의 관점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목차는 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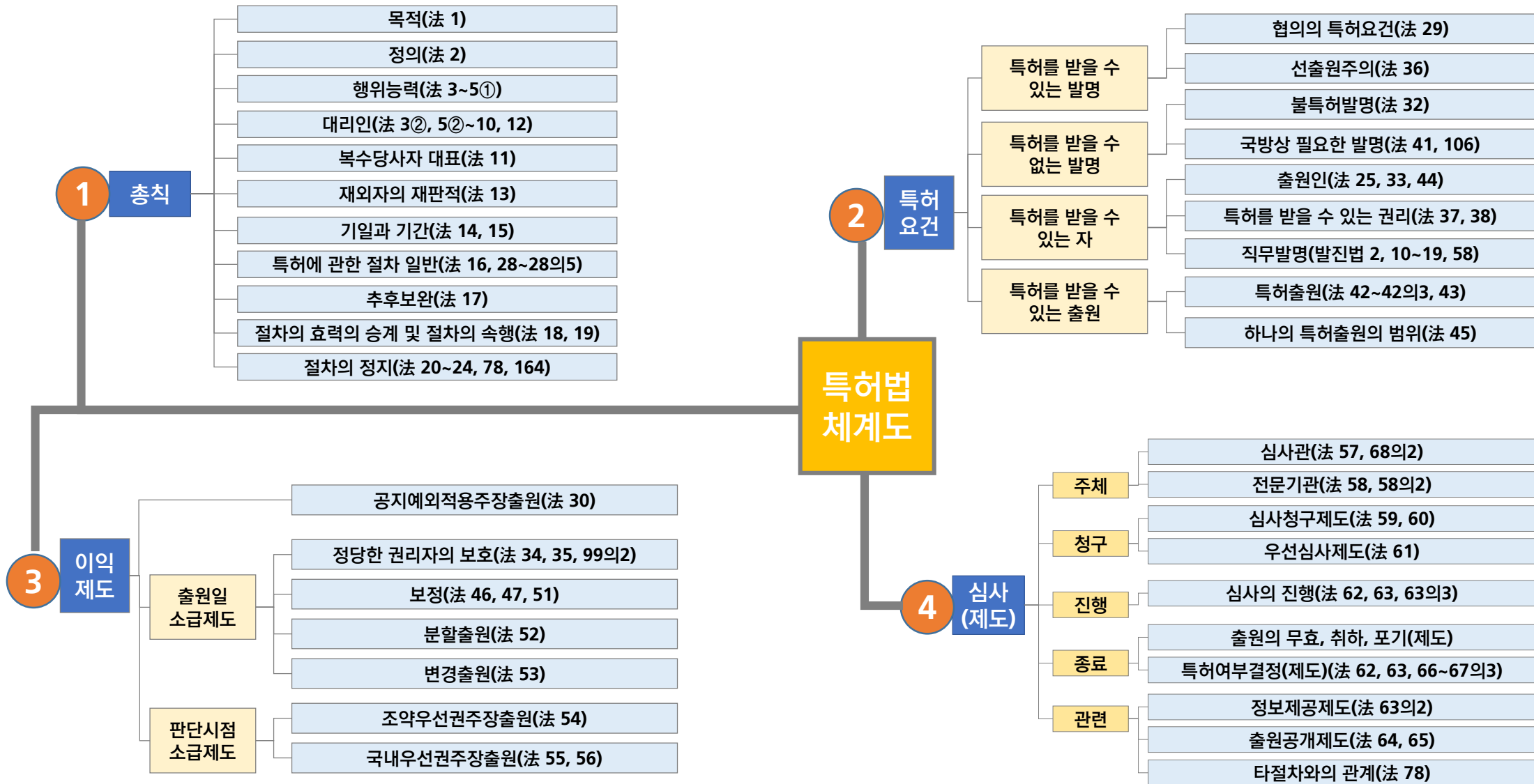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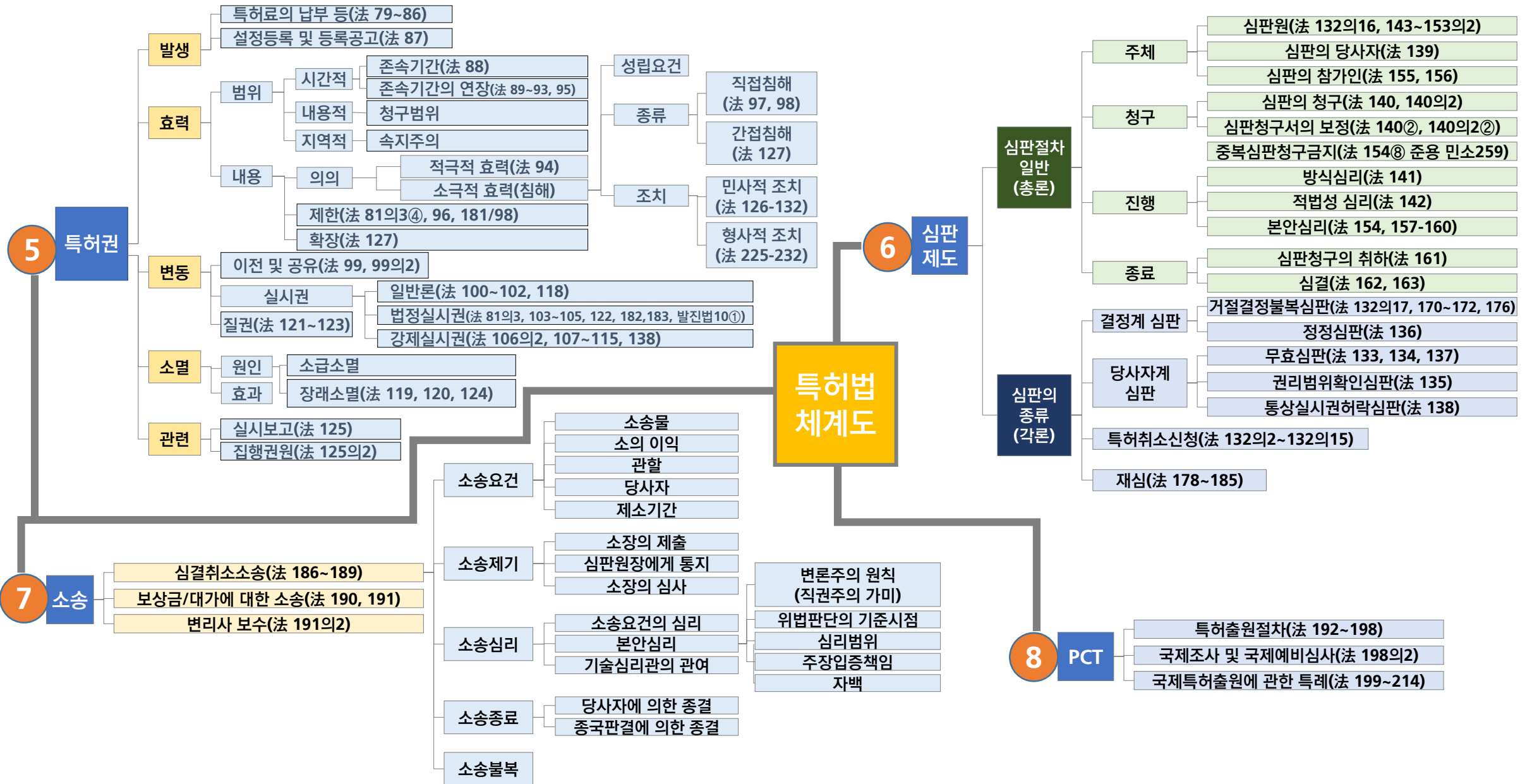
내 관점을 투영하여 특허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자의 관점을 고민하면, 논리력을 향상시켜 목차의 활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내 관점이 생기면, 모든 법을 동일한 체계 속에서 보다 쉽게 정리할 수 있다.









**최대한 무색투명하고 단순한 목차**(특허법뿐만 아니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민사소송법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목차)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요건		
내용		
판단	기준	주체적
		객체적
		시기적
		지역적
	방법	
위반 조치		
PCT		

제도		
요건	주체적	
	객체적	
	시기적	
	지역적	
절차	원칙	
	예외	
효과	적법	
	부적법	
PCT		

권리		
발생		
효력	범위	시간적
		내용적
		지역적
	내용	의의
		제한
		확장
변동	이전	
	실시권	
	질권	
소멸	원인	
	효과	

발명		
요건	특허요건	
절차	이익제도	
	심사	
효과	특허권	
기타	심판	
	소송	
	P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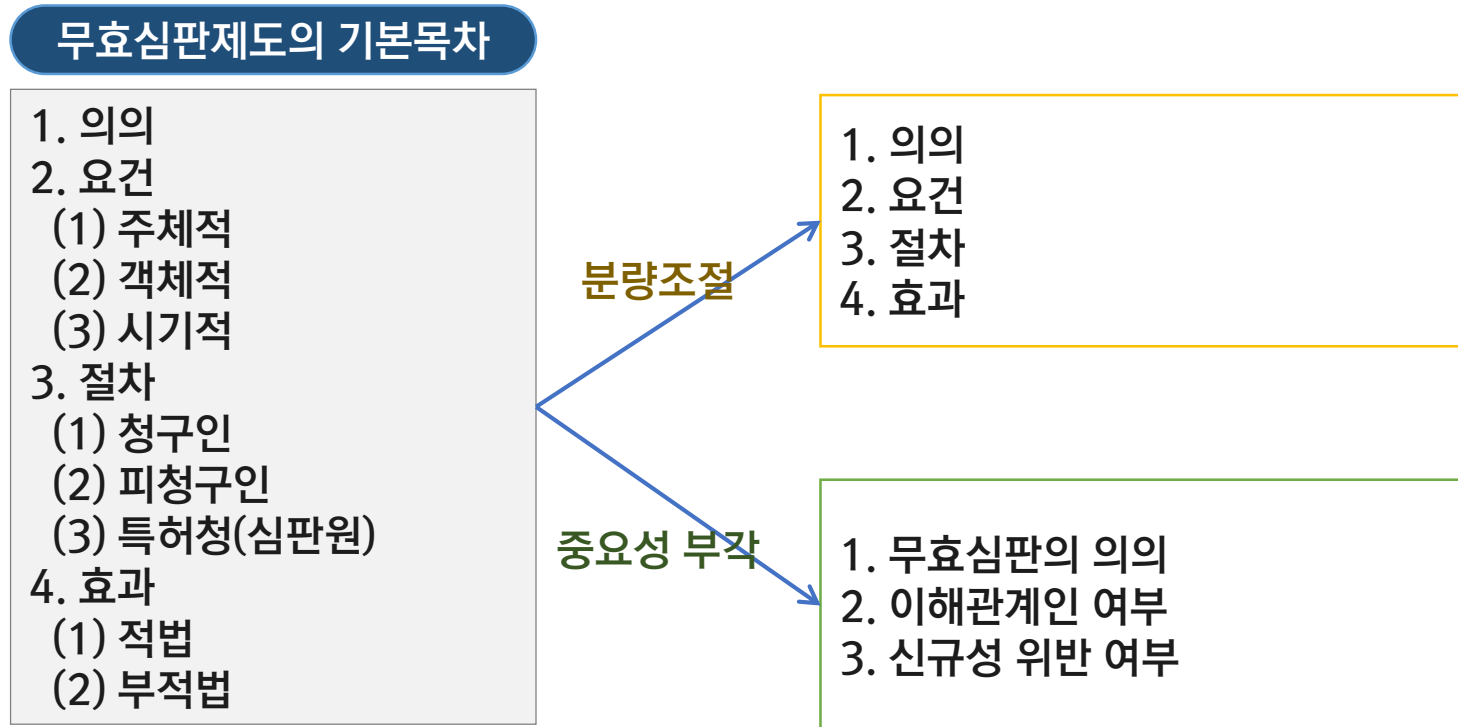
# 특허법 공부방법: 목차정리: 기본목차 CASE(특허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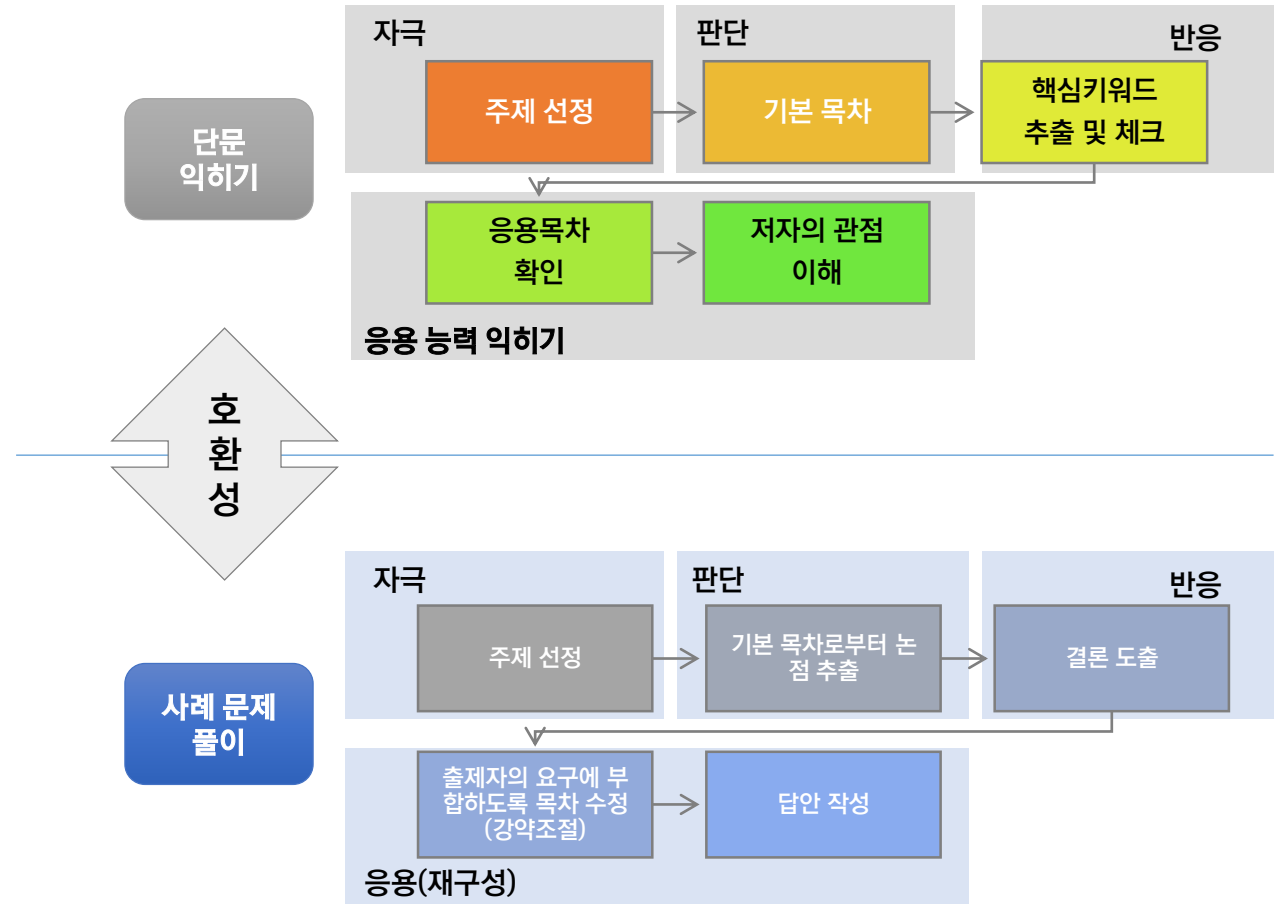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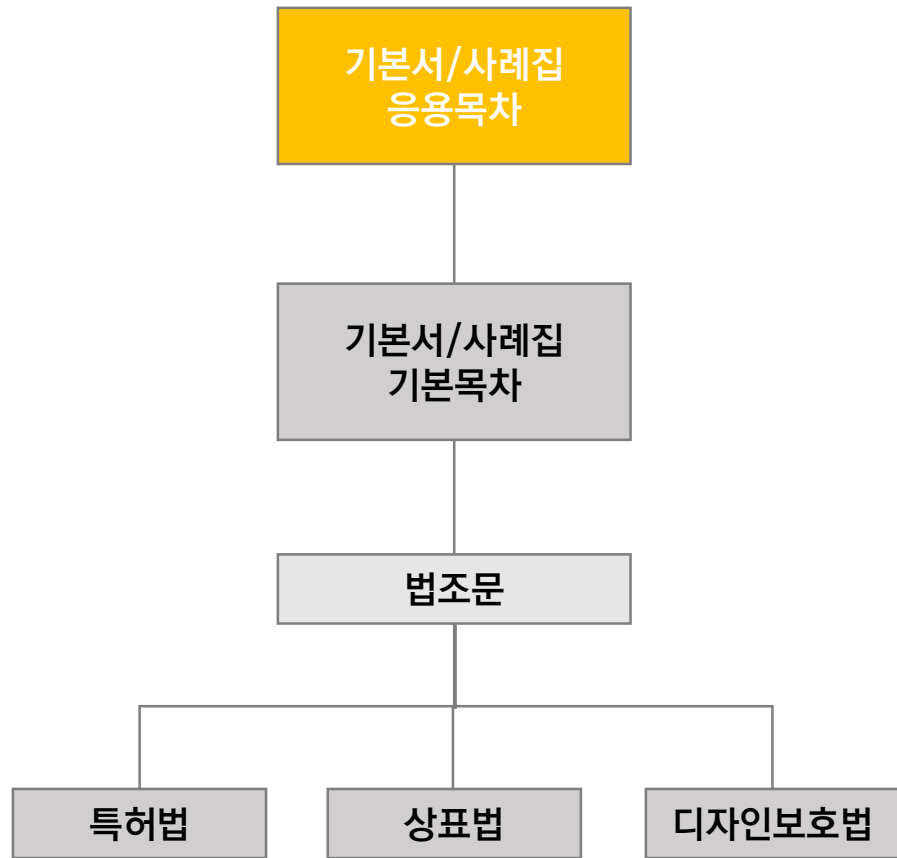
		발명의 성립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선출원주의	
의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화된 것	산업에서 실제 실시될 수 있는 발명	발명의 내용이 사회일반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객관적 창작성이 있는 것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	특허출원한 발명이 그 특허출원일 전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하여 그 특허출원 한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다른 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과 동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선출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출원자에게 발명을 허여하는 주의	
내용		1.자연법칙 이용 2.기술적 사상 3.창작 4.고도	1.산업 2.이용가능성	1.공지 2.공연실시 3.반포된 간행물에 게재 4.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			1.이일출원(法36①③) 2.동일출원(法36②③⑥) 3.선출원지위의 인정여부(法36④⑤)	
판단	주체적 기준	심사관, 심판관, 법관			1.심사관, 심판관, 법관 2.통상의 기술자 입장에서 판단	심사관, 심판관, 법관		
	객체적 기준	대상	청구범위 중심으로 명세서·도면을 창작	공지기술(1개) vs. 청구범위	공지기술(1개이상) vs. 청구범위	다른 출원 최·명·도 vs. 그 출원의 청구범위	선출원 청구범위 vs. 후출원 청구범위	
		범위	청구항마다(단, 특허여부결정은 출원단위)					
	시기적 기준	원칙	법규정×(실무상 출원시)	특허출원전	특허출원전	1.그 특허출원일전 다른 출원-역일주의(단,동일자 적용×) 2.그 특허출원후 다른 출원의 공개-(시각주의)	출원일	
		예외	1.소급-정당권리자출원(法34. 35), 분할출원(法52②), 변경출원(法53③), 조약우선권주장출원(法54①), 국내우선권주장출원(法55③) 2.국제특허출원-우선일					
	지역적 기준			국제주의	左同(단, 통상의 기술자 수준은 국내만 고려)	국내주의(속지주의 원칙)		
판단방법	1.비발명 2.미완성발명	1.의료업 2.경제성 3.불성립발명 4.타법과 관계 5.결과물과 관계	동일성	용이성	동일성			
위반의 효과		실체적 요건 위반						
기타		발명의 성립성이 문제되는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	1.진보성 상실의 예외 2.고안의 진보성과 관계	1.적용의 예외 2.다른 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1.선출원주의의 보완 2.선출원주의의 예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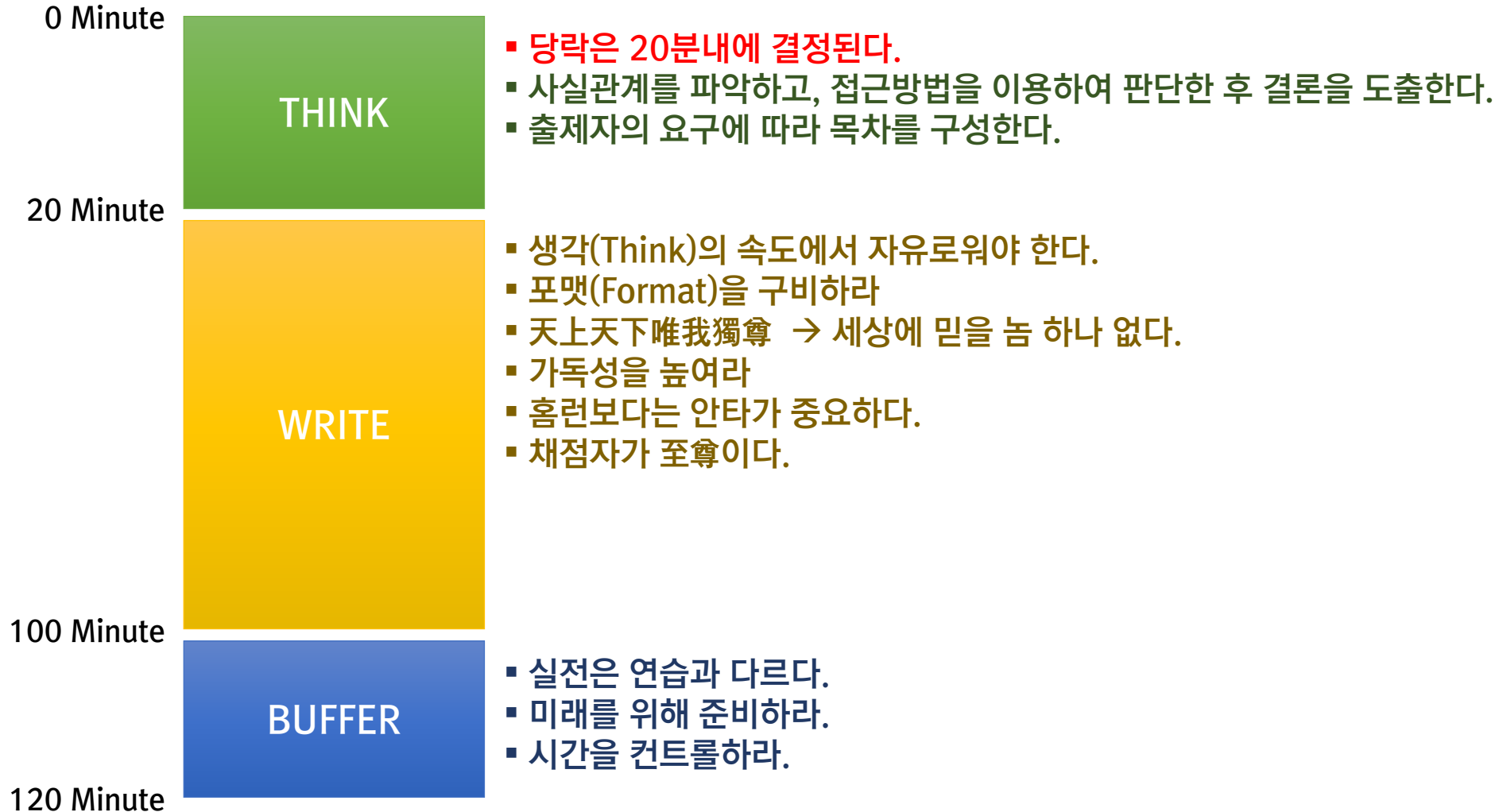
# 특허법 공부방법: 목차정리: 기본목차 CASE(특허요건)

		불특허발명	출원인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의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	출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i)일반적인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인 권리능력이 있어야 하며, ii)권리능력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당해발명에 대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적격이 있어야 함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발명의 공개를 전제로 하여 특허청에 대하여 특허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말하며, 특허절차는 출원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는 발명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발명마다 하나의 특허출원을 원칙으로 하나,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일 군의 발명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다.	
내용		1.공서양속에 위반된 발명 2.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	1.권리능력자 ①자연인, 법인 ②외국인의 권리능력 (法25) 2.권리적격자 ①발명자 ②자연인 ③특허청직원 ④공동발명	1.종류 ① 의의 ② 역할 2.기재방법 3.청구범위제출 유예 4.외국어특허출원	1.하나의 발명 하나의 출원 원칙 2.일군의 발명 하나의 출원보완	
판단	주체적 기준					
	객체적 기준	대상	청구범위	청구범위	독립항을 기준	
		범위	청구항마다(단, 특허여부결정은 출원단위)			
	시기적 기준	원칙	특허여부 결정시			
		예외				
	지역적 기준					
판단방법	1.인체를 구성요소로 할 때의 판단 2. 성보조기구에 대한 판단 3. 타법의 인허가와와의 관계				시행령 제6조에 의해 판단	
위반의 효과		1.출원공개의 예외 2.실체적 요건 위반	주체적 요건 위반	1.실체적 요건 위반 (法 42③ I,④) 2.절차적 요건 위반 (法 42③ II,⑧)	절차적 요건 위반	
기타					1.최소한의 판단 2.보정에 의한 청구항 변경의 경우	

**암기하는 방법과 쓰는 방법은 다르다.** 암기는 가장 기본적인 목차로 했더라도 쓸 때는 알고 있는 내용을 변경시켜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분량을 조절하면서 쓰는 연습을 해야 한다.







## 사 례

- 출원이 등록받을 수 있는가?(특허요건)
- 실시가 침해가 되는가?(침해성립요건)

## 단 문

- 대분류: 특허법 체계
- 중분류: 요건, 제도, 권리, 발명
- 소분류: 핵심키워드(법조문)

A B C D E F

G H I J K L

**접근방법**  
(정형/비정형)

자극, 판단, 반응의 매커니즘을 이해해야 한다

× C D E F G × ×

빠뜨리지 않아야 살 수 있다.  
채점은 Check List에 의한다.